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8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 박상혁·강훈식·이해식

한민수 · 한준호 · 박희승

홍기원 · 강선우 · 이연희

김주영・황명선 의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 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는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음.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모임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 대다수 경로당이 양곡 외에 밑반찬 등 부식 구입을 위한 비용은 지원을 받지 못해 어르신들이 별도로 부식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최근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비

한 상태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대해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용 외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 도록 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2 항). 법률 제 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를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 및 부식구입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냉난방 비용"을 "냉난방 비용 및 취사용 연료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행 개 정 안 혂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 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입비 등의 보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 -----공동급식 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 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 비 및 부식구입비----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 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 방 비용 및 취사용 연료비----조할 수 있다.